SIAC와 2025년 규칙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중재기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1991년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5대 중재기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600건이 넘는 신건을 접수했으며, 그 과반수에는 싱가포르 당사자가 없습니다. SIAC의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기피신청을 결정하며, 사무국(Secretariat)은 사건을 관리합니다. SIAC의 중재인 명단에는 기술 분야 경력을 가진 중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IAC는 거래소, 토큰 판매, 채굴 계약, 수탁 실패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인을 선정해 왔습니다. 사건 통계는 디지털 자산 사건을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기술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1]

2025년 규칙

SIAC 규칙 제7판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날 이후 개시된 중재에 적용됩니다. 주요 혁신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간이절차(Streamlined Procedure)는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청구에 적용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이 판정부 구성 후 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의 기준 금액이 1,000만 싱가포르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셋째, 긴급중재인 절차에서 이제 중재신청서 제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내리는 보전적 예비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이 도입되었습니다. 넷째, 예비판단 절차로 판정부는 개별 쟁점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병행절차(coordinated proceedings) 규정이 관련 중재들을 다룹니다. 여섯째, 제3자 자금조달 공개 의무가 이를 완성합니다.[2]

이 혁신들은 각각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간이절차는 토큰 인도나 SAFT 배정에 관한 분쟁 중 가액이 100만 싱가포르달러에 못 미치는 다수의 분쟁에 적합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정식 중재 비용이 청구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보전적 예비명령은 일방적(ex parte) 동결명령에 해당하는 중재상의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토큰을 옮기고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이 절차 개시를 알기 전에 긴급중재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규칙에서는 긴급 신청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했으므로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비판단을 통해 판정부는 준거법상 토큰이 증권인지를 조기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절차는 다수의 매수인이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토큰 판매에 적합합니다.

긴급중재인과 토큰 동결

긴급중재인 절차는 토큰 분쟁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쓸모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중재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IAC는 하루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며, 긴급중재인은 14일 이내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 명령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또한 IAA가 중재판정부에 긴급중재인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법원 명령과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규칙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보전적 예비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통지 없이 24시간 이내에 결정되며, 긴급중재인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현상을 유지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긴급중재인의 한계는 곧 중재의 한계입니다. 그 명령은 당사자만 구속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거래소에 계정 동결이나 고객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신청인은 법원에 가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IAA s 12A에 따라, 거래소 소재국에서는 그 나라 법의 상응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따라서 모범 실무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긴급중재인은 피신청인에게 토큰 처분을 금지하고 토큰의 소재를 공개하도록 명하며, 거래소에 송달된 s 12A에 따른 법원 명령이 계정을 동결합니다. 스위스법도 같은 결합을 제공합니다. 국제사법(IPRG/PILA) 제183조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명하고 국가 법원이 이를 지원하도록 허용하며, 국내중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CPC) 제374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3]

사례

추크(Zug)의 한 재단이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SIAC 중재조항이 있는 SAFT에 따라, 자사 거버넌스 토큰 200만 개를 싱가포르의 한 벤처펀드에 매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큰 생성 이벤트 당일 재단은 120만 개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새로 도입된 락업의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펀드는 보전적 예비명령 신청과 함께 긴급중재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명령이 내려져 재단은 미인도 토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긴급중재인은 8일 후 심리를 거쳐 그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펀드는 IAA s 12A에 따라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에 토큰이 상장된 싱가포르 거래소를 상대로 명령을 신청하여, 재단의 마켓메이킹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판정부는 이후 락업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토큰 인도를 명했으며, 예비적으로 인도일의 가격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중재판정은 4개월 이내에 뉴욕협약에 따라 스위스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주

1. SIAC Annual Report 2024 및 2025년 통계.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SIAC Rules 2025, Rule 13 및 Schedule 2(Streamlined Procedure), Rule 14 및 Schedule 3(Expedited Procedure), Rule 12 및 Schedule 1(Emergency Arbitrator), Rule 46(Preliminary Determination), Rule 17(Coordinated Proceedings), Rule 38(Third-Party Funding). ↩
3. Swis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PILA; IPRG), SR 291, 제183조; Swiss Civil Procedure Code (CPC; ZPO), SR 272, 제374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